

## 법정책이슈브리핑

Law &amp; Policy Issue Briefing

제2022-4호

발행일 : 2023. 1. 10. (화)

##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소고 : 의원입법과 사전적 입법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 1. 서론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회의원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및 제안하여 성립된 법률을 말한다. 제15대 국회('96~'00)를 기점으로 의원입법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통제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sup>1)</sup> 최근까지도 관련 부처인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법률안 성안 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심의와 협의를 두루 거치면서 규제영향분석, 성별·부패·통계·개인정보보호·자치분권 등 다양한 측면의 입법영향을 평가받고 있는 정부입법과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의원입법의 경우 부실입법, 과잉입법, 소위 우회입법(절차회피적 입법)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 왔다. 입법영향평가는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입법의 행정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예산상 영향 등 제반 영향을 사전과 사후에 평가하여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sup>3)</sup> 의원입법의

<sup>1)</sup> 참고로 국회의원의 의안발의 요건이 완화(기존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된 제16대 국회 이후로 의원입법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의견도 있다(서인석,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21, 267쪽).

<sup>2)</sup> 2021년 6월 3일 세종시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8월 23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 ‘규제영향분석과 입법과정’이라는 제하에 의원입법의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sup>3)</sup> 박균성,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145쪽.

주요한 통제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는 법률안의 성안 전이나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영향평가를 이르는 것으로 법률이 일반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나 생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랜 논의와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등을 주요한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고, 현재 제 21 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sup>4)</sup> 이에 법정책임슈브리핑 제 2022-4 호에서는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입법적 논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주요국과의 제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확인한 후, 관련 입법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의원입법 실태와 통제 제도 도입 논의

먼저 의원입법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에 대해 알아본다.

### 1. 의원입법 현황 및 문제점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화되고, 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실시되면서 의원입법의 수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원입법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문제시할 사항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법률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자구 수정이나 제목 변경 등을 통해 중복, 부실입법을 하거나 정부가 복잡한 정부입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개별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의

뢰하는 우회입법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의원입법은 제 14대 국회까지 제안 건수가 321건(가결 건수: 119건)에 그치는 등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추이를 보였으나 제15대 국회부터 제안 건수가 1,144건(가결 건수: 4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후 새로운 국회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제안 건수를 기록하여 현재는 제21대 국회가 절반 정도를 지나는 시점이지만 이미 18,147건이 제안되는 등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특히 지난 5대의 국회에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가결 건수를 통해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압도해 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등한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된다.<sup>6)</sup>

[표1] 의회 v. 정부 법률안 가결 건수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발의/ 제출	의회안(A)	1,912	6,387	12,220	16,729	23,047
	정부안(B)	595	1,102	1,693	1,093	1,094
	비율(A/B)	3.2배	5.8배	7.2배	15.3배	21.1배
가결	의회안(A)	514	1,350	1,663	2,414	2,890
	정부안(B)	431	563	690	379	305
	비율(A/B)	1.2배	2.4배	2.4배	6.4배	9.5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편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전 절차를 비교해 보아도 의원입법에 대한 우려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정부입법의 경우 국회 제출 전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의원입법은 국회법제실 검토와 필요시 법률안 비용추계 정도밖에 거치지 않아 법률안 성안 과정에서 검토와 수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sup>4)</sup>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91, 제안일자: 2020. 7. 14.).

<sup>5)</sup>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최종확인: 2023. 1. 4.).

<sup>6)</sup> 21대 국회에서 2022년 9월 말 현재 가결된 법안 중 의원발의가 75%, 위원장제안이 18%, 정부 제출이 7% 내외의 비율을 보였고, 의원발의와 위원장 제안을 합친 의원입법 비율이 93%에 육박하고 있다; JHS,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2022년 4/4분기 정기 보고서), JHS 리포트, 2022, 12쪽.

[표2] 국회상임위원회 상정 전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 준비 절차

정부입법	의원입법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국회제출	입법준비 법률안 입안 국회법제실 검토 법률안비용추계

출처: 국회법제실 (2008); 민경선, 의원입법에 있어서 부패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2020), 62쪽에서 재인용.

## 2.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도입

그동안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7)</sup> 주로 「국회법」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혹은 입법영향분석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형태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이들 법률안은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 소관 위원회나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법률안,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이 주요한 법률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안이 당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III.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나라마다 정부형태와 법률의 정립 과정·절차, 권력분립의 형태 등이 달라 각국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유무와 같이 일의적으로 비교·대조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불필요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실정 및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시사점을 찾는 것도 또한 같을 것이다.

## 1. 주요국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사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내각)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요한 법률에 대한 입법이 주로 정부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입법 비율에 비해 정부입법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주요국의 법안가결율 및 정부/의원 법률안비율 현황

국가	임기	유형	정부안 (A)	의원안 (B)	정부안대비 의원안 비율(B/A)
미국	'11~'12	제출/발의 수	-	10,439	-
		가결 수		917	
		가결율		8.8%	
영국	'06~'10	제출/발의 수	127	384	3.02배
		가결 수	108	18	0.17배
		가결율	85%	4.7%	-
프랑스	'07~'12	제출/발의 수	762	6,070	7.97배
		가결 수	385	90	0.23배
		가결율	47%	1.5%	-
독일	'05~'09	제출/발의 수	539	431	0.80배
		가결 수	488	108	0.22배
		가결율	90.5%	25.1%	-
한국	'08~'12	제출/발의 수	1,693	12,220	7.22배
		가결 수	690	1,663	2.41배
		가결율	40.8%	13.6%	-

<sup>7)</sup>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제안)된 대표적인 법률안 등으로는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793, 제안일자: 2013. 9. 11.),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857, 제안일자: 2013. 5. 7.),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4988, 제안일자: 2015. 4. 30.),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802, 제안일자: 2018. 9. 29.),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91, 제안일자: 2020. 7. 14.),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 의견 등이 있었다.

출처: 최병일, 김현중,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KERI Brief(2013. 12. 12.), 한국경제연구원, 8쪽.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입법에 대해서 규제영향평가 등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어,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큰 문제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관련 부처가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9)</sup> 프랑스에서는 “의원 발의안이 공공재원을 감소시키거나, 공공부담(public charge)의 신설이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의회에 접수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헌법 제40조),<sup>10)</sup> 양원합의,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심사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의원입법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sup>11)</sup>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정부의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도 입법과정에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명시하고 있거나 엄격히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은 상하원 의회내 규칙에 따라 법안심의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법안심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연방하원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법안심의 보고서에 법안의 해당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법안 관련 예상 비용,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비용, 위원회 자체 비용 산정 내역과 정부 해당 부처의 비용 산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 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미연방상원에서도 법안과 관련된 비용추계와 함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개인을 파악하여 그 유형과 규모, 규제에 인한 경제적 영향, 기타 행정부담 등을 위원회 법안심사보고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sup>9)</sup> 서성아, 의원입법 영향평가 비교조사, 한국행정연구원, 34쪽.

<sup>10)</sup> 전진영, 국회의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이슈와 논점, 제67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3쪽.

<sup>11)</sup> 최병일, 김현중, 앞의 글, 9~10쪽.

<sup>12)</sup> 서성아, 위 보고서, 57쪽.

## 2. 시사점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영향평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소극적인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남용되어 법안이 남발되고 부실입법, 과잉입법으로 이어져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의원입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라마다 적절한 입법과정과 절차,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나라들은 최근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한 예가 EU의 유럽의회조사처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입법영향평가와 그 제도화이다.

## IV. 의원입법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화 관련 쟁점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다.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문제시된 주요한 쟁점만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1. 개요

의원입법을 제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입장의 가장 주된 논거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권은 의회의 본원적 기능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권

한이 부여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는 어느 사안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에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곧바로 입법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법률의 마련을 위해선 오히려 그 필요성이 작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전적 입법영향평가가 이와 같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이미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법안 심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대상 법률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관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며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쟁점은 항을 나누어 검토해 본다.

## 2. 세부 쟁점

여기서는 소관 법률, 평가 대상, 평가 기관, 평가 내용 및 기준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 가. 소관 법률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규정할 경우 어느 법률에서 이를 명시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서는 「국회법」 혹은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으로 했는데,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FA)」, 「문서감축법(PRA)」, 「미지원의무지출개혁

법(UMRA)」, 「국가환경정책법(NEPA)」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필요한 입법영향평가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명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sup>13)</sup>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부 견해에 따르면 「국회법」에서 사전 입법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두고, 「국회입법조사처법」의 직무 규정에 입법영향평가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sup>14)</sup> 이는 아래에서 볼 평가 기관의 문제와도 관련된 쟁점인데 특정한 기관의 소관 법률에 과중한 직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 나. 평가 대상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대상을 확정하여 이를 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모든 발의, 제안 법률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행할 것이냐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안은 입법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sup>15)</sup> 비교법적으로도 모든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에서 평가 대상을 확정할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입법의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의 요구, 규제 신설 및 강화, 소요 예산의 크기, 국민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이 주요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평가 기관

다음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sup>13)</sup>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국회입법조사처, 2020, 33쪽.

<sup>14)</sup>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sup>15)</sup> “영향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법률안, 막대한 인력과 비용 발생, 입법영향분석의 형식화 우려 등의 이유로 분석대상 법률안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만우,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방안,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자료집, 52쪽.

지도 주요한 쟁점이 된다. 형식적 권력분립원칙에 근거할 경우 국회 내부기관을 통해 사전적 입법영향평가가 실시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조직과 인력,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위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조직을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감안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통해 행하는 기존 입법영향평가 제도들(예컨대,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실행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회 법제실, 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조직을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 라. 평가내용 및 기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성별·부패·통계·개인정보보호·자치분권 등 다양한 측면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법률안을 평가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쟁점이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제도화 이후에 더욱 주요한 사안이 될 것인데, 현재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지에서 관련한 연구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경험과학적 기준과 법규범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기준이 명확히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외국의 입법 관련 전문가들이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경험과학적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의 전통과 핵심에는 입법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폭넓고 깊이 있는 숙의(deliberation)

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16)</sup>

## V. 결론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한걸음 나아간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국회 안팎으로 계속되고 있긴 하다.<sup>17)</sup>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라고 하여 확정된 방법론이나 분석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입법을 위해 필요한, 당해 입법이 가져올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파 등을 미리 면밀히 예측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는 관점이나 한꺼번에 모든 측면의 입법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과 여건,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감안하여 제한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실제로 의원입법을 마련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책임이슈브리핑 이번 호에서의 문제제기가 이 이슈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sup>16)</sup> 김준,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23쪽 각주 12).

<sup>17)</sup> 앞서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학술적 연구와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에서 제·개정된 법률에 대해 입법평가를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언론사인 머니투데이 ‘더300’은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제정 및 시상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일부를 분석하여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를 마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 ● ○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법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법정책이슈브리핑을 수시 발간합니다. 법정책이슈브리핑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www.jipyong.com

법정책이슈브리핑 구독신청